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807호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3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 2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46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 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 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호 보상계획공고 ..... 6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호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6

## 기 타

- 인천아암초등학교공고 제2020-1호 관인등록 공고 ..... 39
- 인천아암초등학교공고 제2020-2호 관인등록 공고 ..... 40

회 람									
--------	--	--	--	--	--	--	--	--	--



##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0-3호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 7.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건축물 신축공사
2. 사업주체(변경없음): 넥스플랜(주),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주)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7 C동 206호(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1-2)
  -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306호(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변경)
  - 가. 위 치(변경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0-2 (송도1공구 B2블록)
  - 나. 대지면적(변경없음): 32,909.9㎡
  - 다. 연 면 적(변경): 320,430.1902㎡(증33.3731㎡)
  - 라. 건설주택 규모(변경)
    - 공동주택(아파트)(변경): 지상 10~59층 / 5개동 / 1,205세대
      - 84A형 396세대, 84B형 108세대, 102A형 288세대, 120A형 396세대
      - 157A형 9세대(증 1세대), 157B형 1세대(감 1세대), 157C형 1세대,
      - 175A형 4세대 175B형 2세대
    - 업무시설(오피스텔)(변경없음): 지상 50층 / 1개동 / 320호
      - 59A형 274세대, 59B형 46세대
    - 부대복리시설(변경없음):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7개동

마. 사업비(변경없음): 965,125,518천원

4.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 2019. 12. ~ 2023. 12.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변경없음)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46호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1. 9.

## 인천광역시장

변경등록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체명	변경사항			주관과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15-0- 인천광역시- 3호 (2015.1.15.)	인천서가협회	대표자	신현진	오두교	문화예술과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58호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1. 9.

##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

등록번호 (등록일)	단 체 명	소재지	주된 사업	등록 변경 사항			비고 (주관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007-0- 인천광역시- 35호 (2007.8.28.)	인천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65-21	방법순찰 교통정리	대표자	명충호	변재천	안전 정책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0-2호

##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보상 3차)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9.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1. 공익사업 개요

- 가. 사업명 :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공사
- 나. 사업위치 :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선원면 냉정리
- 다. 사업규모 : L=9.37km, B=17~35m
- 라. 사업기간 : 2013. 11. ~ 2023. 12.
- 마.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장(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2. 보상계획

- 가. 보상대상 :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 참조  
 ※ 편입 토지 지번 및 면적은 지적 분할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 나. 보상방법 및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름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요청 (보상금개별통지)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지급  
 \*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 → 재결보상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또는 소송

- 다. 보상시기 : 열람기간 경과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안내 개별통지('20년 4월 예정)
- 라.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마. 보상금지급 : 보상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0. 1. 9.(목) ~ 2020. 1. 23.(목) ※ 14일 이상(토일 포함)

나. 열람장소 : 인천종합건설본부(3층) 토목부 토목보상팀 (☎ 032-440-5164)  
및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도로과(☎ 032-930-3447)

다. 열람방법 : 소유 관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라. 이의신청방법 : 토지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

※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4. 편입 토지(총 118필지)

소재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 번
길상면 온수리 (10필지)	500-66, 554-8, 500-51, 51-28, 554-7, 51-45, 29-3, 29-4, 49-8, 31-15
불은면 신현리 (10필지)	161-106, 161-107, 161-15, 161-99, 161-103, 161-101, 산41-12, 161-105, 산25-5, 산25-3
불은면 두운리 (70필지)	1048-25, 1048-24, 1048-27, 1048-15, 1048-26, 1049-1, 1069-9, 1039-5, 1036-4, 1026-6, 1026-7, 1026-8, 1026-9, 1013-7, 1013-1, 1048-22, 1048-20, 1046-5, 1043-17, 1043-19, 1043-18, 1043-16, 1043-4, 1042-2, 1040, 1041-1, 1035, 1034-1, 1027, 1028-1, 1025-1, 1023-3, 1011-3, 1004-6, 1003-6, 431-8, 432-3, 397-7, 395-16, 395-19, 395-5, 395-17, 395-18, 395-15, 443-4, 443-5, 452-14, 451-3, 1160-1, 1025-2, 1013-2, 1013-3, 1011-2, 1003-4, 996-3, 995-5, 397-8, 396-5, 396-7, 395-8, 395-6, 439-5, 395-7, 442-3, 443-2, 448-4, 451-2, 451-5, 452-13, 452-12
불은면 삼동암리 (2필지)	30-43, 29-9
선원면 금월리 (24필지)	599-2, 578-3, 577-2, 571-6, 572-2, 575-5, 575-8, 575-6, 573-29, 573-35, 573-33, 573-30, 573-36, 557-6, 573-28, 557-7, 552-1, 551-6, 546-1, 549-7, 548-2, 549-2, 573-32, 548-10
선원면 냉정리 (2필지)	229-8, 91-6

###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http://www.incheon.go.kr>) 및 개별 통지문 참조

###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 합니다.

다.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보상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1호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 월 8 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 제안이유

- 가.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생태계 조성과 수소산업 클러스터 및 수소 도시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 나. 인천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소산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육성·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안 제3조)
-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 지원의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 유관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안 제12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 20.(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 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인천광역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제조·포집·정제·저장·운반·충전·활용 등 수소이용과 관계되는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를 영리목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발생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차, 건설장비, 특수차량 등 수송수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수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러스터 및 융복합을 통하여 분야별 수소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수소사업자와 영업활동을 지원하거나, 수소발전 중심의 에너지 독립형 전원체계와 열의 활용, 수소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자동차 보급체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지역(신재생에너지의 융복합화, 전력망과 수소의 통합망 운영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과 생활단지의 실증, 시범과 그 단계를 넘는 신산업단지, 신도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수소경제”란 탄소가 함유된 화석연료기반의 에너지에서 탄소의 함량이 낮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수소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결국 탄소 배출이 없는 수소에너지의 경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기반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 공급가격 안정화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국내외 및 인천광역시 수소산업의 산업환경과 현황·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육성 방안 및 연관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활성화,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계획
5.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안전관리 계획
7.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
2.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배관망 구축
3. 수소산업·연료전지의 기반시설 구축
4.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활용 및 촉매공법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5.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수소산업관련 기관·단체·기업 등에 우선적으로 제공 및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5. 그 밖에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천광역시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에 수소산업위원회를 설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무원
3.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현안
4.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기술동향, 제품개발,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필요한 경우 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기술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
5. 수소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 및 공감대 확산 관련 사업
2.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4. 수소산업의 홍보와 안전을 위한 영상물 제작 및 후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 등에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input type="checkbox"/>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련법령 발췌사항

### □ 인천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4조(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 시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공동수행) ① 시장은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공공기관·정부출연 기관·대학·기업·과학기술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협력기관등” 이라 한다)등 과 다음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과학기술 연구개발 촉진 사업
2.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국제과학기술 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4. 첨단산업 육성·지원사업
5. 인천전략·특화 기술 개발 지원 사업
6.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판로 및 수출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국내·국외 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한다.

제10조(기술 지원) 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신기술, 신제품 등을 개발하고, 참가기업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을 위하여 공동 기술연구, 기술이전 등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1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여 기업 및 교육기관이 추진하는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노사협력 증진과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단체와 개인을 발굴하는 등 각종 노사화합 시책을 시행한다.

**제13조(창업 지원)** ① 시장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 창업보육센터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창업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개발·시행한다.

**제14조(기업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적극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 (설치 등)**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 계획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및 조정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관련 기본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3. 에너지 행정의 민·관 협력 방안 마련
4.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5.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
6. 에너지 사용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사용 제한에 관한 심의
7. 교육 및 홍보 등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22조의2(공유재산 임대 등)**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옥상 이외의 장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요율은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시장이 매년 산정하여 공고한다.

##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제4조(시책과 장려 등) 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기업체 등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장려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제27조(보급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급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적용사업 및 시범사업

2.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集積化團地) 및 시범단지 조성사업

3.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보급사업

4. 실용화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개발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비인증을 받거나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그 부품의 공용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제1항에 따른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할 수 있다.

제30조(신·재생에너지의 교육·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육성·지원할 수 있다.

**[붙임 2]****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따른 경비의 지원(안 제9조)
- 수소산업위원회 참석에 따른 수당(안 제10조제7항)
- 에너지센터 설립 등(안 제22조의4)

**2. 비용 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2019.1)」 관련 수소경제 핵심 사업으로 추진 및 확대 예정인 수소전기차 등 수소모빌리티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추계하였으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용추계를 생략함
  - 안 제9조에 따른 경비 지원 중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배관망 구축 등 일련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와 연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능함
  - 안 제10조 제7항 규정에 의한 수소산업위원회 참석 수당은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조례제정에 따른 신규 사업시행 및 사업 확대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2020년도 부터 향후 5년간 186,29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다. 재원조달방안 (국·시비)

- 국비 : 사업별로 매칭비율 상이(64%~67%)
- 시비 : 사업별로 매칭비율 상이(33%~36%)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에너지정책과장 박 철 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소계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세출	수소연료 전지차 보급사업	20,540,000	29,2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86,290,000
	소계	20,540,000	29,2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86,290,000
재원 조달		국비, 시비	국비, 시비				
국 비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시비	소 계	7,460,000	9,800,000	14,800,000	14,800,000	14,800,000	61,66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7,460,000	9,800,000	14,800,000	14,800,000	14,800,000	61,660,000
군·구비							
민 간							
기 타							

## 연도별 세부비용 추계표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수소충전소 보급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5,000,00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0,080,000	11,25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88,830,000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4,200,000	4,200,000	4,200,000	4,200,000	16,800,000
	수소버스 보급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소 계	13,080,000	19,450,000	30,700,000	30,700,000	30,700,000	124,630,000
세 출	수소충전소 보급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30,000,000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14,540,000	16,250,000	32,500,000	32,500,000	32,500,000	128,290,000
	수소버스 충전소 보급		6,000,000	6,000,000	6,000,000	6,000,000	24,000,000
	수소버스 보급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000,000
	소 계	20,540,000	29,2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86,290,000
재 원 조 달		국·시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2호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1월 8일

## 인천광역시회의장

###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 인구 300만 시대에 걸맞는 수상인원의 확대 조정, 산업구조 다양화에 따른 소상공인분야 신설 및 추천권자 확대,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으로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상을 수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수상인원을 15인 이내로 확대(안 제2조제1항)
- 나. 산업발전상 상공업분야 중 소상공인분야를 신설하고, 상공업 사용자분야, 상공업 근로자분야 소상공인분야로 정비함.  
(안 제2조제1항제3호)
- 다.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을 1인으로 하고,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함.(안 제2조제2항)
- 라.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 수상자를 선정 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3항)

- 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수 있게 함.(안 제4조)
- 바. 시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사. 수상자의 특전을 확대함.(안 제14조)

### 3. 자치법규안 : 별첨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뚜렷한”을 “뚜렷한”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

### 1. 사회공익상

가. 봉사분야

나. 공익분야

다. 환경분야

라. 새마을분야

마. 국제교류분야

바. 기타 특별분야

### 2. 효행상

### 3. 산업발전상

가. 상공업 사용자분야

나. 상공업 근로자분야

다. 소상공인분야

라. 농수산분야

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 수상인원은 1인으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특정 부문 및 분야에 적당한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 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로 2인 이상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라목 및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상공업”을 “상공업, 소상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조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끝남으로써”를 “끝남으로써”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민상 업무담당 국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3.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
4. 수상부문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1항 중 “처리하기위하여”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2조 중 “가름하여”를 “갈음하여”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예우 초청

제15조의 제목 “(실비변상)”을 “(수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로,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인천광역시 시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u>뚜렷한</u>----- ----- ----- -----.</p>
<p>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 인원은 10인(단체포함)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공익상 6인이내</li> <li>2. 효행상 1인이내</li> <li>3. 산업발전상 3인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공업분야 2인이내(사용자1인, 근로자1인)</li> <li>나. 농수산분야 1인이내</li> </ol> </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정부문 및 분야의 수상대상자로 추천된 후보들의 공적이 탁월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총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항각호의 부문별 및 분야별 인원을 초과하여 수상자를</p>	<p>제2조 (수상부문) ① 인천광역시 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수여하며 수상 인원은 15인 이내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공익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봉사분야</li> <li>나. 공익분야</li> <li>다. 환경분야</li> <li>라. 새마을분야</li> <li>마. 국제교류분야</li> <li>바. 기타 특별분야</li> </ol> </li> <li>2. 효행상</li> <li>3. 산업발전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상공업 사용자분야</li> <li>나. 상공업 근로자분야</li> <li>다. 소상공인분야</li> <li>라. 농수산분야</li> </ol> </li> </ol> <p>② 제1항 각 호의 부문 및 분야별</p>



현행	개정안
<p>3. 산업발전상 : <u>상공업 및 농수산 발전에 공헌한 자</u></p> <p>4. 5. &lt;삭제&gt;</p> <p>6. <u>시민의 민주의식 함양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시민</u></p>	<p>3. ----- <u>상공업, 소상공업</u> -----</p> <p>&lt;삭제&gt;</p>
<p>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u>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u></p>	<p>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u>구청장·군수가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소속 실·국·본부장 및 산하 기관장을 통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u></p>
<p>제6조 (<u>위원회의 조직</u>) ②·③ (생략)</p> <p>④ <u>위원은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와 수상부분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시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u></p>	<p>제6조 (<u>위원회 설치 및 구성</u>) 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시민상 업무담당 국장</u></li> <li>2. <u>인천광역시의회 의원</u></li> <li>3. <u>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원로인사</u></li> <li>4. <u>수상부분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u></li> <li>5.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u></li> </ol>

현           행	개           정           안
<p>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u>끝남으로서</u> 만료된다.</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u>처리하기 위하여</u>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p> <p>② (생략)</p> <p>제10조 (시상) 시민의 날에 시행 <u>한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u> 할 수 있다.</p> <p>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시민상을 수령할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에 <u>가름하여</u> 받을 수 있다.</p> <p>제14조 (수상자의 특전) 시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u>다음 각호의</u> 특전 또는 대우를 하여야 한다.</p> <p>1.·2.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3. (생 략)</p>	<p>⑤ ----- ----- <u>끝남으로써</u> -----.</p> <p>제9조 (간사와 서기) ① ----- ----- <u>처리하기 위하여</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 (시상 시기) 시상은 시민의 <u>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u> 정할 수 있다.</p> <p>제12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 ----- ----- ----- <u>갈음하여</u> -----.</p> <p>제14조 (수상자의 특전) ----- ----- <u>다음 각 호</u>----- -----.</p> <p>1.·2. (현행과 같음)</p> <p>3. <u>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u></p> <p>4. <u>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u> <u>간담회 개최</u></p> <p>5. <u>해마다 시민의 날 귀빈예우</u> <u>초청</u></p> <p>6. (현행 제3호와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15조 (실비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u>준하여</u>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 ----- ----- 따라 --- -----.</p>

## [붙임 1]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p>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정형섭

기 타

관인등록공고

[인천아암초등학교 공고 제2020-1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아암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인천아암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1. 8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 관인등록공고

[인천아암초등학교 공고 제2020-2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아암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인천아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20. 1. 8

[관인]

인천아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아암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